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(안)

2005. 4. 1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4월 6일
 - 다. 상정일자 : 제111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5. 4. 14)
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,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개별 주택가격평가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개정
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·직급별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,
-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
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,298명을 1,307명으로, 집행기관의
정원 1,272명을 1,281명으로 총 9명 증원함.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했던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에 관한 현행규정을 2004. 12.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정원증강요인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직5급 1명, 일반직 7급 3명, 일반직8급 3명, 일반직9급 2명이 증원되고, 개별주택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직7급 1명, 일반직8급 3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고,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능직10급(지도원) 4명은 퇴직등으로 자연 감소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,272명에서 1,281명으로 9명이 증원됨.

○ 동 건은 그 동안 규칙으로 정했던 직급별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(집행기관, 구의회)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자연 감소된 기능직10급(지도원)4명을 제외하고 증원된 정원[지방5급 1명, 7급 4명(개별주택가격평가 1명), 8급 6명(개별주택가격평가 3명), 9급 2명)] 9명에 대한 비용은 기본급 등의 인건비로 3억3,398만4천원,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로 3,571만 6천원 등 총 3억6,97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2005. 4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,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,
-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,298명을 1,307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1,272명을, 1281명으로 총 9명 증원함. (안 제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 음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지방자치법(2004.1.29 법률 제7128호)제103조
- (2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(2004.12.18 대통령령 제18603)제14조 및 제21조
- (3)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-745(2005.01.25) 및 조직담당관-1646(2005.02.28)호

나. 예산조치 : 예산팀 협의 완료

다. 협 의

- (1)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-745(2005.01.25) 및 조직담당관-1646(2005.02.28)호
- (2)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5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완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(2005. 2.28 ~ 3.20) 결과, 특이한 사항 없음.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- (3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- (4) 기구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“1,298명”을 “1,307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272명”을“1,281명”으로 한다.

제3조본문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으로 정한다”를, “별표1과 같다”로 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직렬별 정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관련, 별표1 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”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98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72명</u> 2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 - - - - - - - - - <u>1,307명</u> - - - - - - - 1. - - - - - : <u>1,281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의 규정) 구분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 및 등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<u>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으로 정한다.</u> (신 설)	제3조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의 규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1과 같다.</u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렬별 정원은 <u>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.</u>

[별표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307	894	26	91	296
정무직 계	1	1	0	0	0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29	618	11	76	224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7	25	0	8	24
6급	174	135	3	12	24
7급	270	167	4	27	72
8급	290	201	3	22	64
9급	130	84		6	40
별정직 계	14	6	7	1	0
5급 상당	2		2		
6급 상당	1	1			
7급 상당	9	5	3	1	
8급 상당	1		1		
9급 상당	1		1		
기능직 계	363	269	8	14	72
6급	5	5			
7급	14	14			
8급	33	29			4
9급	93	65	6	3	19
10급	218	156	2	11	49

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

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4조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재난관리부서 1개과 신설
- 정원 9명 증원 [5급 1, 7급 4, 8급 6, 9급 2, 기능10급 △4]
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
총 계	393,775		
○ 인 건 비	333,984		
- 기본급	190,104	- 5급 27호 기준	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
- 수 당	58,673	- 7급 17호 기준	
- 정액급식비	14,040	- 8급 12호 기준	
- 교통보조비	13,560	- 9급 8호 기준	
- 명절휴가비	17,878	- 기능10급 22호 기준	
- 가계지원비	29,797		
- 연가보상비	9,932		
- 기타직보수	-		
- 일용인부임	-		
○ 이전경비	35,716		
- 성과상여금	6,793		
- 연금부담금	21,893		
- 국민건강보험금	7,030		
- 연금지급금	-		
○ 물 건 비	24,075	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-	구본청 1개과 신설 기준	기구신설에 따른 소요비용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3,600	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135		
- 직책급여업무추진비	1,200		
- 직급보조비	14,340	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4,800		